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나4278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V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2.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256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V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1.부터 각 2022. 9.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V 주식회사(이하 '피고 V'이라 한다)와 피고 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3. 체결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V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9. 9. 11. 접수 제5762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②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사해행위취소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①항 중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V만이 당사자이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V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거듭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B에 국한된 내용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에 등장하는 “C”을 전부 “V”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 중 “별지 범죄사실”을 “제1심판결 별지 범죄사실”로 고치고, 제21행 중 “갑 제6호증” 다음에 “, 갑 제10호증의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중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을 “을 제1호증 내지 3, 6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 중 “공도담보”를 “공동담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H조합 등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이 사건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6호증)을 발급받거나 피고 B로부터 확인서(을 제7호증)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52개 호실 전부가 공실임을 확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위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 중 “수사기간”을 “수사기관”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V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한혜진, 판사 전유상